

발전기금 운용규정

제 1 장 총 칙

-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출연된 기부금품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항과 학교발전을 위한 기부금품 모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적용범위)** 기부금품의 관리·운영 및 모금행위에 관하여서는 학칙 등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 제 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금품”이라 함은 교육·연구·장학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발전을 위하여 무상으로 출연된 부동산·현금·유가증권·물품 및 기타 재산을 말한다.
 2. “관리·운영”이라 함은 제 1 호의 기부금품을 학교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거나 기부금품의 모금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 4조 (기부금품의 용도)** 기부금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1. 학술연구지원
 2. 연구기자재 및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3. 국제학술 교류지원
 4. 장학 지원
 5. 도서 확충
 6. 교육·연구기본시설 및 지원시설 등의 확충
 7. 기타 발전기금조성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의 지원
- 제 5조 (관리·운영의 원칙)** ① 기부금품은 기부자의 기부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기부목적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의 사용은 발전기금조성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2 장 발전기금조성위원회

- 제 6조 (설치)** 기부금품 모금계획수립과 기부금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전기금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 7조 (구성)** ① 위원회는 대외협력부총장, 각 단과대학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대외협력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그 외 위원은 교직원, 동문 또는 대학의 건학정신을 존중하고 그 실현에 동참할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 .04. 20)
-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 ③ <삭제 2023 .04. 20>
- 제 8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금품 모금 계획의 수립과 조정
 2. 기부금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3 .04. 20)
 4. <삭제 2023 .04. 20>
- 제 9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협의를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04. 20)

② 실무위원회는 제7조 제1항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제 10조 (회의) 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 .04. 20)

제 11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인을 둘 수 있고, 간사는 대외협력홍보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2. 10. 23, 2017. 6. 7, 2018. 2. 23, 2018. 12. 12, 2023 .04. 20)

제 12조 (여비지급)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 3 장 관 리 · 운 영

제 13조 (호서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약정서의 작성) ① 총장은 기부금품을 출연하고자 하는 기부자와 별지 제1호 서식의 호서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약정서를 체결할 수 있다.

② 총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가 대리하여 기부약정서를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제 14조 (회계규정 준용) ① 기부금품은 학교회계와 구분하여 별도회계로 처리할 수 있으며, 경리에 관한 업무는 재무담당부서 소관으로 한다.(개정 2017. 6. 7)

② 기부금품의 재산과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 .04. 20)

제 15조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을 기부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 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2. 10. 23)

제 4 장 기 부 자 예 우

제 16조 (기부자에 대한 예우) ① 총장은 기부자에 대하여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리기 위해 그에 상응한 예우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기부자 예우에 관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 제6호의 시설물에 기부사실을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표기는 시설물의 명칭부여 또는 시설물의 일부에 기부사실을 기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 5 장 보 칙

제 17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영수한 기부금품의 관리·운영 및 모금행위 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0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7)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 23)

- ①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처 홍보팀’을 ‘대외협력실 홍보팀’으로 한다.

부 칙(2018. 12. 12)

- ①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조직개편에 따라 ‘대외협력실 홍보팀’을 ‘기획처 홍보팀’으로 한다.

부 칙(2023. 4. 2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라 ‘홍보팀’을 ‘대외협력홍보팀’으로 한다.

[제2호 서식]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개정 2012.2.28>

일련번호	
------	--

기 부 금 영 수 증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② 기부금 단체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소재지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③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④ 기부내용							
유형	코드	구분	연월일	내용			금액
				품명	수량	단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②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③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④기부내용의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유형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지정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우리사주
필요경비(손금)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공제제외

- ④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제3호 서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 <개정 2012.2.28>

일련번호	
------	--

기 부 금 영 수 증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② 기부금 단체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소재지	

③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④ 기부내용

유형	코드	구분	연월일	내용			금액
				품명	수량	단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 ②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③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④ 기부내용의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유형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지정	4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우리사주	42
필요경비(손금)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공제제외	50

- ④ 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